

2023년
(사)마을기금사람숲
제 10차 정기총회



주 소: (03710)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25(남가좌동)
전 화: 02)312-3903/010-2737-0679 팩 스: 02)322-9755
홈페이지 : <http://사람숲.com>

■ 2023년 제10차 마을기금 사람숲 정기총회 식순 ■

[1부] 여는 마당

사회: (마을기금 사람숲 이사장)

- 회원 인사나누기

[2부] 총회

- 출석인원 확인 및 성원 보고(서면총회에 따른 위임장 접수)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와 서명 날인인 선임
- 의사일정 승인
- 전차 총회 회의록 확인
- 상정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의 건
 -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폐회 선언

■ 차 례 ■

(사)마을기금 사람숲 풀뿌리 기금사업 이해하기	4
마을법인 (사)마을기금 사람숲 연혁	5
2022년 제 9차 총회 회의록	13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5
2022년 감사 보고서	22
202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24
임원 선임의 건	32
기타 안건	33
별첨 자료	
정관	35
기금 및 대부규정	40
회원 명부	44

▣ 마을기금 사람숲 풀뿌리 기금사업 이해하기

(사)마을기금 사람숲은

파편화된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창립했습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지역풀뿌리 기금 조성 및 경제공동체 형성
-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마을기금 사람숲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닿는 돈의 선순환 흐름을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일궈낼 것입니다.

마을기금이란?

십시일반 마을사람들이 모은 돈(seed money)으로 마을사람들이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까다로운 은행 대출절차로 힘들거나 비싼 이자를 내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부를 통해 마을은행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마을 회원들이 마을공동체를 통한 관계맺기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마을기금 사람숲이 운영하는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예: 출자신탁금, 후원금, 회원적립금, 공유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신탁되거나 후원된 건물 등)

마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대부

단체나 기업의 거점 마련을 위한 보증금,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설립이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개인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합니다.

• 지원

- 마을활동가를 직접 또는 간접지원 (예, 교육지원, 연수경비 보조 등)
- 다양한 공동체 활동 후원 (예, 회원소모임, 마을잔치, 지역행사 후원 등)

• 투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방식으로 추진되는 활동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목적기금(계)

풀뿌리계, 여행계, 잔치계, 기념일계 등 개인 또는 단체의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금융설계를 제공하고 전용계좌를 운영하여 그 실행방안을 지원해 줍니다.

(예, 청년주거안정기금, 해외연수기금, 여행계 등)

■ 마을법인 (사)마을기금사람숲 연혁

년월일		연혁	
준비 과정	2012년	12월	서대문 마을넷 內 기금분과 구성
	2013년	1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주관 마을기금 워크숍 참가
		2월	마을기금분과 세미나
		3월	사회투자기금 관련 세미나 3회 진행
		5월	“지역기금사업의 현황과 전망”(안산포럼과 연계)
		6월 ~ 8월	“마을기금전문가 과정” 참여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주관)
		7월	성미산 대동계 사례발표(마을아카데미와 연계)
		8월 ~ 10월	서대문 풀뿌리기금 사업설명회
		10월	“돈의 인문학” (마을넷 경제분과와 공동진행)
			서대문 풀뿌리 기금 설립을 위한 마을기금분과와 지역사회연계 준비 모임 개최
마을법인 준비 위원회 구성			
10월 ~ 12월	마을법인 총회준비위원회 준비 회의		
2013년	12월	사단법인 서대문사람숲 창립총회 초대 김성희 이사장 취임	
2014년	1월	사단법인 서대문사람숲 신년회 마을기금운용위원회 구성	
	2월	2월 회원어울림 마당	
	3월	지역 내 자조적 금융의 중요성과 과정에 대한 간담회 마을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서대문생협 용자 결정	

년월일	연	혁
2014년	4월	서대문 사람숲 4월 회원 어울림 마당
	5월	서대문 마을기금 포럼 개최 서울복지재단 e품앗이 사업약정 체결
	6월	지역주민(회원) 생활자금 용자 지원사업 서대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수탁 체결
	7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시범)사업 선정
	11월	서대문 사람숲 청년주거 해법찾기사업 주택(전세)마련
	12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송년회
2015년	1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신년회
	2월	서대문 사람숲 1차 정기총회 개최
	3월	서대문 사람숲 3월 정기 모임
	4월	마을기금 법인 서대문 사람숲 간담회
	5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12차 이사회
	7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13차 이사회
	8월	서대문 사람숲 사무국장 채용 공고
	12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송년회
2016년	1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1차 이사회
	2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차 상환
	3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2차 이사회(총회준비) 제3차 사람숲 정기 총회 개최 우쿨렐레 소모임 활동 지원 시작
	5월	서대문 사람숲 3차 이사회
	6월	사단법인 사람숲 기금위원 구성 및 활동: 대부규정안 수정, 대부 신청서·상환계획서·출자약정서 등 제작
	7월	서대문 사람숲 4차 이사회
	8월	서대문 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참가(대표단체) 마을기금 특강 ‘모금,요청하라!’ 실시
	9월	서대문 사람숲 5차 이사회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단체 교육 및 워크숍 참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차 상환
	10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홈페이지 제작 서대문구 지역사회 혁신 민관합동TF 참가 서대문 사람숲 청년주거 해법찾기사업 주택 전세 계약 완료
	11월	서대문 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대표단체 협약 체결 마을넷 주민연대사업 참가 및 기금설명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차 상환
	12월	서대문 사람숲 6차 이사회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송년회

년월일	연혁	
2017년	1월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운영위, 실행위원회 2018 서대문 플랫폼 풀뿌리 기금조성 및 자산화 전략 비전
	2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3차 이사회의(총회준비)
	3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3차 이사회의(총회준비) 서대문 사람숲 2차 이사회 제4차 사람숲 정기 총회 개최
	4월	서대문 사람숲 출자자(1명)/사람숲 개인회원 1명 대부(500만원) 서대문 사람숲 집담회/서대문 사람숲 운영위원회 대부규정수정 서대문 사람숲이사장 연임(김성희)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운영회의
	5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5차 상환
	6월	서대문 사람숲 활동가 채용/사람숲 기금운용회의
	7월	서대문 사람숲 3차 이사회/사람숲 기금운용회의
	8월	사람숲 기금운용회의/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비전회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6차 상환
	9월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운영회의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단체 교육 및 워크숍 참가
	10월	정리정돈 강좌 소모임 4회 활동 지원/ 플랫폼 2년차 사업 계획서 제출
11월	서대문 사람숲 4차 이사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7차 상환/마포구 마을포럼 참석	
12월	사단법인 서대문 사람숲 송년회 2017년 지역협치 디딤돌 성과공유회 참석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운영회의	

년월일	연혁	
2018년	1월/ 2월	서대문 협치조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가 (사)서대문 사람숲 1차 이사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8차 상환
	3월	'나는 활동가' 서대문NGO아카데미 참석 (사)서대문 사람숲 2차 이사회(총회준비) (사)서대문 사람숲 제 5차 정기 총회 개최/(사)마을기금 사람숲 명칭변경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사람숲 자산화기획회의
	4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2차 자산화기획회의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 운영회의
	5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이사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9차 상환
	6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자산화기획회의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사업 마무리
	7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이사회/사람숲 1차 기금운용회의 (사)마을기금 사람숲 홈페이지 (http://사람숲.com) 개설
	8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0차 상환
	9월	2018 서대문아카데미 공간과 리더 워크숍 참석
	10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4차 정기이사회
	11월/ 1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4차 이사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1차 상환 (사)마을기금 사람숲 소모임

년월일	연혁	
2019년	1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기금운용회의 2019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신년 하례식 및 소모임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이사회
	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2차 이사회(6차 총회준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차 상환 (사)마을기금 사람숲 로고 제작
	3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제 6차 정기 총회 개최 김성희 이사장취임 전상희 이사 사임, 김태희 이사 취임 이태영 감사사임, 서인필 감사취임
	5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3차 상환 (사)마을기금 사람숲 주소지 변경 (서대문구 가재울로 25(남가좌동))
	6월/ 7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이사회
	8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4차 상환(사투기금상환 완료)
	9월	2019년 4분기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신청
	11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4차 정기이사회 (사)마을기금 사람숲 소모임 2회
	1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소모임 1회 (사)마을기금 사람숲 5차 이사회 및 송년회 (사)마을기금 사람숲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695호와 관련 기부금단체로 지정

년월일	연혁	
2020년	1월/ 2월/	2020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신년인사 홈페이지 공지 2019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기부금 국세청 신고
	3월	2020년 제 7차 총회 (서울시 서면총회 권고)
	4월	2020년 제 7차 총회(서면총회) 위임장 발송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이사회의(7차 총회준비) 2020년 제 7차 총회(서면총회) (사)마을기금 사람숲 비회원 긴급대부 안 기금운용위 제안 및 이사회 심의 최상천 감사취임
	5월/ 6월/ 7월/ 8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비회원 긴급대부안 홈페이지 및 단톡방 공지 (코로나 19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긴급자금)
	9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리플릿 제작
	10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2차 정기이사회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기금운용회의 (사)마을기금 사람숲 비회원 긴급대부 결의
	11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기금운용회의
	1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이사회(서면)
	2021년	1월/ 2월
3월/ 4월		2021년 제 8차 총회(서면총회) 위임장 발송 2021년 제 8차 총회(서면총회)
5월/ 6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2차 이사회의 (사)마을기금 사람숲 홈페이지 관리 재계약
7월/ 8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홈페이지 관리 재계약
9월		2021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추석인사 홈페이지 공지
10월/ 11월/ 1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단톡방 공지: 2021년 주민자치 전국민관학 소규모 공론장 공지 및 자료 공유

년월일	연혁	
2022년	1월	2022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신년인사 홈페이지 공지 2021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기부금 국세청 신고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이사회의 (서면/ 비대면 : 9차 총회준비)
	2월 3월	2022년 제 9차 총회(서면, 비대면 총회) 총회집 및 위임장 발송 2022년 제 9차 총회 (서면또는 비대면) 김태희 이사, 이영희 이사, 김성주 이사, 최수경 이사 연임 최상천 감사 연임
	4월 5월 6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2차 이사회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1000만원 기부식
	7월 8월 9월	김상숙 활동가 퇴사 및 이현주 활동가 채용
	10월 11월 1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3차 정기이사회
	2022년	1월
2월		(사)마을기금 사람숲 1차 이사회의 (대면 : 10차 총회준비)

■ 출석인원과 성원 확인

총 회원 31명 중

참석 (위임장 접수)

명 (유효 참석 명)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선임

○ 정기총회 의사록 서기

- 1.
- 2.

○ 정기총회 의사록 서명날인인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 회원 가나다순)

- 1.
- 2.
- 3.

■ 의사일정 승인

○ 주문사항 : 다음의 의사일정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의 건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전자 총회 회의록 확인

□ 2022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제 9차 정기총회

2022년 (사)마을기금 사람숲 제 9차 정기총회

- 개최일시: 2022년 2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개최장소: 비대면 줌화상회의
- 총회원수: 25명

1부

- 사회자: 김성희 이사장
- 여는 마당
 - 화상으로 회원 인사나누기

2부

- 총회
- 출석인원 확인 및 성원 보고 (총원 25명 위임장, 참석 14명)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선임 (의사록 서기- 김윤진 회원 선임)
(정기총회 의사록 서명날인인- 김성희 이사장, 김성주 이사, 최수경이사)
- 의사일정 승인
- 전자(2021년 8차 정기) 총회 회의록 낭독 및 승인 (김성희 이사장)
- 상정의안 심의

- 1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김성희 의장은 김상숙 활동가가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이사회의 현황보고 및 사무국 현황, 회원사업 보고 및 평가, 기금사업 보고 및 평가, 2021년 법인 수거 결산 보고 등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 자료집을 토대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 회원 전원이 동의하여 승인함. 2021년 사업을 보면 경관목적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코로나19상황과 실질적인 마을 전제적인 기금의 동력이 저하되며 크게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생태계조성 지원사업, 풀뿌리기금 경제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원이 있어야했으나 회원에 대한 소규모 공동체는 지원이 들어갔고 단체나 개인에 대한 대부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회원대부건과 회원가입어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금위원장님 평가한 2021년 기금사업보고를 낭독하다.
/ 동의 이영희 재청 김성주

- 2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의 건)

의장은 마을기금 사람숲 감사 최상천가 일반회계 평가서를 김상숙 활동가의 대리 보고하다.
2021년 1월-12월31까지 회계사료를 통해 금잔출납부, 재정별 수지결산서, 연도별 누적 수지 결산서 연도별 수지예산안, 통장 잔액확인서를 확인 후 회계 및 재정상태는 일반 회계원칙에 부합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함. /동의 이영희 재청 김남래

- 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사)마을기금 사람숲의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의 기본으로 활동가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6-7년전부터 자산화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다행히 사람숲 회원인 장수정 마을공동체 라디오 대표가 마을의 뜻있는 분들과 서대문 가재운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여 사람숲이 연대하고 지지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장수정대표가 사람숲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은 하게 하다.

- 4호 의안 (임원 선임 및 중임 건)

의장- 이사 임기 3년, 감사임기 2년으로 임기 만료됨을 알린다.

- 김태희 이사, 이영희 이사, 김성주 이사, 최수경이사는 중임하기로 함
동의-권현욱 / 재청-장수정
- 최상권 감사에 대하여 중임하기로 함
동의-김기완 / 재청-김상숙

- 5호 의안 (기타 안건)

의장(마을기금 사랑금 이사장 김성희)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회원들의 경조사 대한 안건으로 논의함 하다.

- 2022년부터 각 회원생일을 포함해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직계의 경조사 1회 정도 경조비 지출 (경조사비 5만원)
동의-김기완/ 재청- 권현욱

- 의장이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있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는다.

- 의장이 김기완 동의, 전원 찬성으로 19시 30분 폐회시각을 알리고 제 9차 사단법인 마을기금 사랑금 회원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 의장 및 기명날인인 3명은 의결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경과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다.

2022년 2월 24일



사단법인 마을기금 사랑금

의사록 서명 날인인 이사장
이 사
이 사
회 원



이 사 이영희 이 사 김 이 사 김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결주문사항 :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관계조항 : 정관 제 14조 4항 (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정관 목적사업

마을기금법인 (사)마을기금 사람숲은 파편화된 도시의 대안으로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법인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사업, 그리고 지역풀뿌리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마을기금 사람숲 정관 제2조(목적)]

1.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1.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1. 지역풀뿌리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1. 기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마을기금 사람숲 정관 제3조(사업)]

○ 2022년도(4기) 사업보고 및 운영 평가

1. 일반현황

(단위 : 원)

	1기	2기	3기	4기	당기 증감	당기/전기
회원수	31명	31명	31명	31명	0명	100%
적립금 총액	1,720,000원	3,660,000원	5,420,000원	7,120,000원	2,300,000	142%
자산총액	90,533,724원	74,019,785원	70,112,831원	74,530,897원	4,418,066	106%
적립금/ 자산	1.9%	4.9%	7.7%	10.3%		
평균 적립금	55,483원	118,064원	174,838원	229,677원		

※ 대부금 실손처리 하였음.

2. 회원 대부 현황

(단위 : 만원)

2022년	2022년 (2,000)												대부 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0	500	/	/	600	500	300	350	500	/	/	/	3,250

3. 월별 회원 적립금 현황

(단위 : 만원)

2022년	2022년 (771)												적립 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90	30	60	82	62	60	72	60	56	60	62	52	56	1,502

4. 회원 현황

- 1) 신입 회원 : 0명
- 2) 탈퇴 회원 : 0명

■ 총평

- 2022년은 사람숲의 사업은 회원대 회원, 회원대 비회원과의 대면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3년 연속 상·하반기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업여건이 진행하기에 힘들었다. 다행한 것은 회원들의 탈퇴가 없었으며 회원들의 대부가 예산보다는 적게 이루어졌으나 대부신청을 한 회원들은 기금위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빠른 시간에 대부의결이 되었다. 사회적여건상 사람숲의 시민자산화 기획회의를 통하여 사람숲과 다양한 마을공동체 및 시민단체, 기관간의 간담회와 네트워킹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홈페이지와 마을넷 등을 통해 사람숲 마을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마을활동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숲의 마을사업과 대부사업을 홍보가 필요하겠다.

5. 정기/비정기 이사회 현황

회차	날짜	내용	참가자
1차	2022/01/26	1차 이사회	김기완, 김성희, 김성주, 김태희, 이영희, 최수경, 김상숙
2차	2022/05/20	2차 이사회	김기완, 김성희, 김성주, 김태희, 이영희, 최수경, 김상숙
3차	2022/10/27	3차 이사회	김기완, 김성희, 김성주, 김태희, 이영희, 최수경

6. 사무국 현황

- (사)마을기금 사람숲회원 생일 축하 공지 및 선물
- (사)마을기금 사람숲회원 기부금 국세청 신고

■ 총평

- 활동가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마을기금과 공간확보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기획, 연대**할 수 있도록 활동가의 활동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관리 구조와 회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서대문 마을공동체와 지역 민민간 협치에 있어 좀 더 포용하고, 정보공유와 소통, 네트워킹을 통해 사람숲의 지속성과 마을기금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2023년도는 좀 더 회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람숲의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사) 마을기금사람숲의 다양한 사업이 사람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기금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 회원사업 보고 및 평가

* 사람숲 회원 대부이용 및 회원 출자 모금사업

* 기본자산 계좌 정기 예탁

■ 총평

-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회원의 소모임과 마을사업을 통한 새로운 회원 확보가 어려웠으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단체와 기관 간의 연대사업과 참여활동을 통한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기부금 지정단체로서의 사람숲이 무엇보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 (사)마을기금 사람숲의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를 통해 다양한 단체와 개인에 열린 공간으로써 사람숲을 안내하고 있으며, 십시일반 평범한 시민이 공유하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 탈퇴회원의 경우 탈퇴의 원인 분석, 갈등해소와 욕구 수렴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대면적인 접촉을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기금사업 보고 및 평가

* 용자 사업: 2021년 개인대부 7회 실시 / 단체대부 2회

현재 대부 진행: 개인 회원 8명, 단체 1기관

■ 총평

-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연속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부를 통한 지역단체 또는 활동가, 회원 대부 지원을 유지하는 한해였다.
- 2020년도 평가에서 시민자산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본 법인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23년부터는 코로나 19 대응지침 완화로 인해 시민자산화를 위한 책임주체 설정과 지역단체 및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법인 누적 수지결산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이월금((A)	212,305,001	208,458,018	190,445,402
총특별수입(B)	321,193,603	359,976,257	392,369,973
총보조수입(C)	-	-	
총일반수입합계(D)	170,382,189	174,197,557	178,430,663
총지출합계(E)	283,117,774	343,728,412	390,082,338
총수지(B+C+D- E)	208,458,018	190,445,402	180,718,298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특별수입(a)	38,782,654	32,393,716	46,029,148
출연금(기본자산)			
예탁금			
출자금	7,900,000	7,710,000	7,120,000
차입금(사투기금)			
대부상환금(개인)	24,977,649	19,921,568	28,970,100
대부상환금(단체)	3,944,450	2,416,671	7,416,658
투자상환금(전세보증금)			
투자상환금(전세보증금 사투기금)			
투자상환금(배낭식 투자금)			
대손충당금(대부이용수수료=대부이자) 수입	1,960,555	2,345,477	2,522,390
보조사업수입(b)			
보조- 시민협력플랫폼)			
단체- 시민협력플랫폼)			
일반수입합계(c)	3,815,368	4,233,106	3,824,313
가입비	30,000	30,000	
월회비	3,670,000	3,610,000	3,320,000
개인후원(비지정 후원)	40,000		
이자수입	75,368	593,106	504,313
(대부이자수입과 통장이자수입분리)			
유럽연수비(적립금)			
청년주거주택임차료			
지원금(운영)			
잡수입	-	-	
급여지원금	-	-	
월간편차			
일반지출합계(f)	14,012,125	14,947,450	21,300,575
회의비	193,100	70,000	407,870
인건비	12,000,000	12,000,000	9,200,000
일반사업비(기관운	147,850	875,100	

영비, 행사비)			421,450
특정사업비(플랫폼 자부담)	-	-	
유럽연수사업비	-	-	
정모 및 소모임	32,000	669,300	34,000
수용비및수수료	282,945	146,970	236,535
CMS사용료	792,000	792,000	792,000
사무용품비(복합기 임대료)	-	-	12,300
단순인건비	-	-	
관리비(주민세외)	255,610	62,500	62,500
임대료(시설비)	-	-	
잡지출	-	-	
홍보비	-	-	
교통비	-	-	
4대보험료	-	-	
공공요금(전화세/ 인터넷)	308,620	331,580	133,920
월간편차			
월별수지(c- f)	- 10,196,757	- 10,714,344	- 7,476,262
		-	
보조사업지출합계(e)			
시민협력플랫폼자 부담(사람숲)			
시민협력플랫폼사 업비(4개단체)			
시민협력플랫폼보 조금			
특별지출합계(d)	46,598,513	31,406,476	50,229,007
예탁금 반환			1,000,000
출자금 반환	9,460,000	1,080,000	5,640,000
대부현황	36,000,000	30,000,000	42,500,000
원금상환금(사투기 금)	-	-	-
출자금반환(유럽연 수)	1,138,513	326,476	1,089,007
대부이용초과수수 료반환			
후원금			10,000,000
적립현황(유럽연수)			
출연금총액	179,411,280	188,975,937	167,909,228
예탁금총액	25,000,000	25,000,000	25,000,000
출자금총액	1,500,000	1,500,000	500,000
보증금총액	27,310,000	33,940,000	35,420,000
차입금총액	-	-	
적립금총액(유럽연 수)	-	-	
이월금총액	125,601,280	128,535,937	106,989,228

	125,601,280	128,535,937	106,989,228
대부금총액	29,666,658	32,328,419	32,458,331
투자금총액	-	-	
현금총액	95,934,622	96,207,518	74,530,897
	-	-	
	95,934,622	96,207,518	74,530,897

제2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의 건

의결주문사항 : 2021년 감사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관계조항 : 정관 제 23조 (임원의 직무) 및 제 35조 (회계감사)

[제2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의 건

2022년도 마을기금사람숲 회계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2022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마을기금사람숲」(이하 법인)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감사기간 및 방법

- 감사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감사방법: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별첨된 법인의 2022년도 금전출납부, 2022년 계정별수지결산서, 연도별 누적수지결산서, 2022년 수지예산안과 국민은행-서대문신용협동조합의 잔액-잔고증명서의 열람-확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 감사 대상 자료

- 별첨.

3. 감사의견

- 각 사업별/항목별 계좌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금전출납부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기재되었습니다.
- 금전출납부가 계정별로 적합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계정별수지결산서는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하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 연도별누적수지결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적합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 2022년도 수지예산안은 월회비 증가/인건비 감소가 확인되고, 그 외에 전년도와 크게 다르없이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4. 감사결과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 회계 및 재정상태는 일반 회계원칙에 부합하며,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재무제표상의 결산보고서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3년 2월 13일. 감사최상천(서명)

사단법인 마을기금사람숲 회원 및 이사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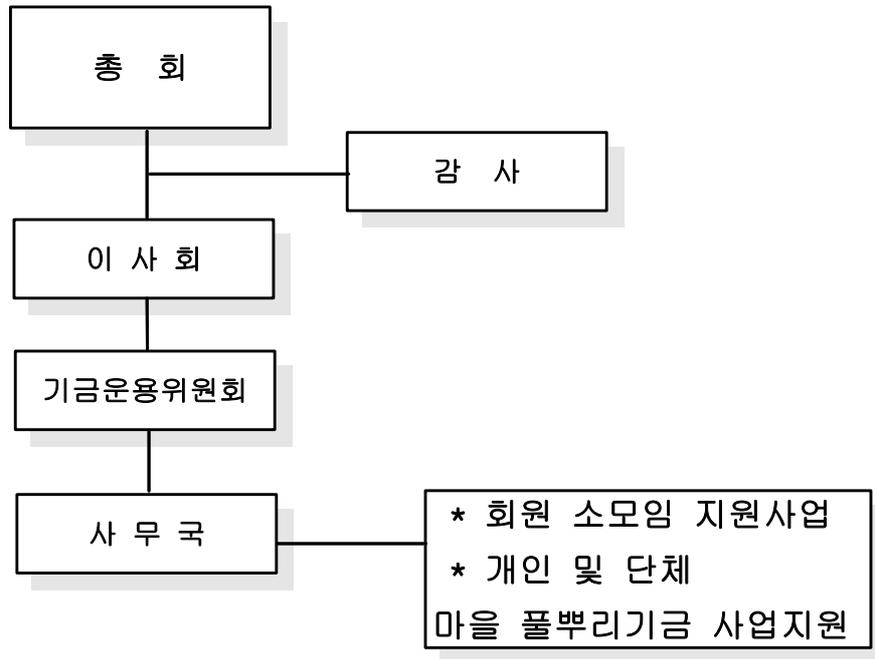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사항 : 2021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관계조항 : 정관 제 14조 (총회의 의결사항)

- * 관련근거 정관 제 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사업추진 체계



○ 2023년 사업계획안

사업 명	목적 및 취지	비고
사람숲 마을회원 소모임	회원 및 비회원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해 주며 회원과 비회원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임.	소모임 등 활동가의 충진을 위한 활동 지원
풀뿌리 기금조성 및 자산화 전략 사업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신뢰구조를 형성하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신규 회원 유입 경로를 확장함.	강사비 등 소요 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 및 시민협력플랫폼 연대사업
사람숲 풀뿌리 마을기금 대부사업	마을기금 사람숲 풀뿌리 기금사업(사회적 대부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협력사업	기부·대출 사업과 펀딩·수익사업 개발과 지역 내 연계 필요
직거래 장터를 통한 사업계획	생산지의 직거래를 통해 바른 먹거리 소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터를 열어 경제를 살리고 풀뿌리기금조성 안전망 구축	분기별로 바른 직거래장터 소개

1) (사)마을기금 사람숲 마을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내 용 : 회원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신규 회원 유입 경로로 삼고자 함
- 추진방법
 - 모임 개설 희망 회원이 [회원 모임 지원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
 - 신청회원이 주관하여 회원모임을 진행하고 <회원 모임 사진>과 <회원 모임후기>를 (사)마을기금 사람숲 홈페이지에 게시
 - 사무국은 회원에게 회원모임 실행여부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고 회원 모임 지원비를 회원에게 지급
- 예 산 : 총 800,000원

항 목	금액(원)	산출 근거	비 고
사람숲 회원 소모임지원사업	800,000	50,000원*6회*3모임	모임당 최대6회(300,000원)지원
자금 마련	법인 적립금에서 총당		

2) 풀뿌리 기금조성 및 자산화전략 사업

- 기간: 2023년 2월 ~ 11월
- 취지: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신뢰구조를 형성하며 회원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신규 회원 유입 경로를 확장함
- 방향
 - 시민사회 자산화 자립 전략기금 준비위원회(모임) 구성
 - 풀뿌리기금 사업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신뢰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마을기금사람숲을 통해 발굴된 지역 사회의 인문학 자원들과의 상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회원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스러운 신규 회원 유입 경로를 확장함
- 내용
 - 활용공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서대문구 관내 등
 - 지역 내의 시민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기업)들과 마을기금에 관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뜻과 비전을 가진 개인(단체)가 역할을 분장하며, 무엇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들에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예시: 마을공동체 모임을 통한 공동홍보 및 교육, 워크숍 등)

- 사람숲회원 및 지역 활동가 사전 욕구조사를 통한 학습 과정 개설
(예시: 사회적 경제에서 자본의 의미, 돈의 인문학, 공동체 풀뿌리 기금, 시민자 산화를 위한 풀뿌리조직방법론 등)
- 과제
 - 사업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마을공동체 개발을 통해 정보 교류를 촉진
 - 운영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 형성
 - 지역 내에서 공간필요성을 느끼는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해 공동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혜자들의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직접 교류하거나 세밀화 된 교육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총 30만원

항 목	금액(원)	산출 근거	비 고
기금사업워크숍	300,000	100,000원*3회	강사비 및 간식 지원
자금 마련	법인 적립금에서 충당		

3) 마을기금 사람숲 풀뿌리 기금사업 지원

- 기 간 : 2016년 ~ 연중상시
- 내 용 : 기금운영위에서 마을기금사람숲 풀뿌리 기금사업(사회적 대부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협력사업, 회의준비 및 회계실무(결산보고)

구 분	세부 사업	일 정	추진 방법(목표)	비고
교육홍보	마을기금 사업설명회	4월~11월	전·후반기 총 2회 실시	서대문구마을공동체와 연계
	마을회원 소모임	연 중	마을모임 조직	
사회적 대부업	기금운영위원회	연 중	월 1회 상시 운영체계구축	
마을기금 협력사업	마을기금 조직	연 중	서대문 지역 3개 이상 마을기금 조직	
기금연대사업	기금연대 상호출자	연 중	서울시 자조(풀뿌리)기금 상호 출자와 연대	사람숲 제안

5) 직거래 장터를 통한 사업계획

- 기 간 : 2023년 지역사회 직거래 사업 연대시
- 내 용 : 생산지의 직거래를 통해 바른 먹거리 소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터를 열어 경제를 살리고 풀뿌리기금

조성 안전망 구축

- 예산: 총 50만원

항 목	금액(원)	산출 근거	비 고
마을생협 연대 직거래장터	500,000	500,000원*1회	농촌, 어촌, 산촌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터
자금 마련	법인 적립금에서 총당		

○ 사업별 세부계획안

교육 홍보

1. 마을기금 사업(마을대학과 연계) 설명회

1) 사업 개요

- 대상: 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및 마을기금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목적: 마을기금 사람숲의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목표: 회원 및 지역주민의 마을기금 의제 발굴 및 사업홍보

2) 활동계획: 전 하반기 각 1회 마을기금 워크숍 개최

3) 예산: 총 100,000원

2. 마을회원 소모임

1) 사업 개요

- 대상: 마을기금 사람숲 회원 및 지역주민(모임)
- 목적: 회원 및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및 대면관계 확장(함께 어울리기)
- 목표: 마을회원 소모임 3개 조직(발굴)

2) 활동계획: 마을회원 소모임 지원사업 실시

3) 예산: 총 900,000원

사회적 대부업

1.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활동

1) 사업 개요

- 대상: 마을기금사람숲 회원
- 목적: 마을기금 활동가 육성 및 상시 회의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기금 사업의 내실화 및 법인 회원간 경제적 유대 및 상호 신뢰 획득
- 목표: 2020년 마을기금 3개 이상 조직 및 네트워크 구성(사이좋게 의사결정하기)

2) 활동계획:

- 마을기금 모금 및 출자 펀딩사업 => 월 1회 정기회의 => 풀뿌리기금사업으로 문턱 낮은 마을은행 시범

3) 예산: 총 300,000원

마을기금 협력사업

1. 마을기금 사람숲 마을기금 상호 협력 및 운영
 - 1) 사업 개요
 - 대상: 풀뿌리 마을기금 활동 참여 회원 및 단체
 - 목적: 마을기금 운영위원 간의 연대와 협력의 내실화
 - 목표: 마을기금 내부 적립금(마을기금적립금)확보
마을기금 정체성 확립 및 회원 홍보
 - 2) 활동계획: 마을기금 해당 회원 간의 자체적인 소모임 구성 지원 (마을모임)
권역별 마을네트워크 및 마을넷과의 의제 연대 사업
 - 3) 예산: 비예산 사업 혹은 후원 편당

기금연대 사업

1. 광역단위 자조기금 연대회의 구성을 위한 상호출자 및 지원체계 구축
 - 1) 사업 개요
 - 대상: 마을기금 연대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마을기금 운영위원)
 - 목적: 서대문 지역 외 자치구 마을(자조)기금 간의 연대와 협력
 - 목표: 광역단위 자조기금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모임) 구성
 - 2) 활동계획: 광역 마을네트워크지원단, (사)마을, (사)마을기업 연합회 및 지역 별 마을(자조)기금체 간의 기금운영 활동가 연대 모임을 구성
 - 3) 예산: 비예산 사업

○ 2023년 수지예산안

	2023년 예산	2022년 결산
이월금(A)	95,934,622	74,530,897
총특별수입(B)	42,365,082	46,029,148
총수입합계(C)	4,490,000	3,824,313
총지출합계(D)	46,038,420	60,529,582
총수지(B+C-D)	816,662	10,676,121
특별수입합계(a)	42,365,082	46,029,148
출연금(기본자산)		
예탁금	2,000,000	
출자금	8,000,000	7,120,000
차입금(상환금)	29,345,082	36,386,758
대손충당금(대부이용수수료)	3,020,000	2,522,390
수입합계(b)	4,490,000	3,824,313
월회비	3,790,000	3,320,000
가입비	150,000	
대부이용수수료		
잡수입(은행이자 포함)	550,000	504,313
지원금(운영)/출자 적립금		
후원금(예탁금 포함)	-	
급여지원금(고용부 청년지원)		
월간편차		
지출합계(c)	46,038,420	60,529,582
회의비	1,000,000	407,870
인건비(실무자)	3,600,000	9,200,000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단순인건비(강사비 등)	200,000	
교통비	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00,000	236,535
사무용품비		
(복합기임대료)/ 시설비	100,000	12,300
CMS사용료	792,000	792,000
공공요금(전화세/ 인터넷)	133,920	133,920
마을연대 행사비(민주시민교육)	100,000	
기금사업 진행비(자산화.사회적대부업 기금운영)	800,000	
정모 및 소모임	800,000	34,000

기관운영 사업비및 홍보비(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영역 지원 공익 활동비)	1,000,000	421,450
출자적립금반환	5,000,000	5,640,000
차입금상환		
대부금지출	30,000,000	32,500,000
대부이용초과수수 료반환	2,100,000	1,089,007
후원금		10,000,000
예탁금반환		1,000,000
제세공과금	62,500	62,500
월간편차		
월별수지(b-c)	41,548,420	46,705,269
대부현황	30,000,000	36,000,0000
투자현황	-	-
적립현황 (유립연수)	-	-
대변(A)	172,398,360	187,975,937
출연금(기본자산) 총액	25,000,000	25,000,000
예탁금총액	2,500,000	500,000
출자금총액	36,940,000	33,940,000
보증금총액		
차입금총액		
이월금총액	107,958,360	128,535,937
차변(B)	107,958,360	128,535,937
대부금총액	27,983,337	32,328,419
투자금총액		
현금총액)	79,975,023	96,207,518
오차(A-B)	64,440,000	59,440,000
시재		74,530,897
신협 131-016-888210	회비	105,044
신협 131-016-926740	대부상환금	15,630,356
신협 150-522-610790(정기예탁)	기본출연자산	25,000,000
신협 131-016-901052	기본출연자산	32
신협 131-016-926726	후원금	3,013,589
국민 498101-01-262502	경상비	2,043,023
국민 498101-01-262528	회원적립금	28,729,549
국민 815601-04-125539	휴면계좌	9,304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결주문사항 : 임원의 선임 건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관계조항 :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임 자격과 제한건)

* 관련 근거

-정관 제19조(임원 선임 자격과 제한건)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022년 김성주이사, 이영희 이사, 최수경이사, 김태희이사 연임 선출)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곧바로 후임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2020년 선출된 김성희 이사장 연임 건)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의결주문사항 : 기타 안건 및 의결사항이 있는지 승인하여 주십시오.

1. 기본 자산금 (약 25000만원) 적금 만기로 금리 높은 상품의 재가입

○ 폐회 선언

<별첨자료 1>

마을기금 사람숲 정관

제1조(명 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마을기금사람숲”(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파편화된 도시의 대안으로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법인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사업, 그리고 지역풀뿌리 기금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2.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3. 지역풀뿌리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4. 기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과 단체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은 본 법인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을 말한다. 정회원은 가입의사를 본 법인에 밝힌 자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후원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비정기적으로 금전적, 물질적 후원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 후원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입회와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는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본 회의 가입과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0조(포상과 징계 등)

1. 회원이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11조(총회)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나 이사진들이 일 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이 어려울 경우 총회안건처리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총회소집의 요건)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15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7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인 이상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

제18조(임원의 선임)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곧바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 ① 이사회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진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ㅍ
-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9조(재 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기본재산의 관리)

-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 법인이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총회 및 인터넷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차입금) 본 법인이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사회적대부업)

본 법인은 풀뿌리 기금사업을 위해 사회적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이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와 관련한 회계 또한 특별회계 분리하여 법인운영회계와 분리시켜 운영한다.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3년 12월 6일(제정)

2018년 3월 22일(개정)

사) 마을기금 사람숲 (인)

<별첨자료 2>

마을기금 사람숲 기금 규정

제정 2013. 12.

1차 개정 2015. 2.

2차 개정 2016. 7. 27.

제1조 (명칭)

1. 본 기금은 “(사)마을기금 사람숲 기금”이라 칭한다.
2. (사)마을기금 사람숲은 “사람숲”이라 칭한다.
3. “이용수수료”란 “사람숲”의 기금을 빌려가는 이용회원이 “사람숲”의 활성화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제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역공동체의 미풍양속을 위해 함께한다.
2. 회원들의 경제적 상호부조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3. 회비 적립과 대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회원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제3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활동
2. 회원들의 경제적 유대를 위한 활동
3. 회원으로부터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4. 지역 공동체 조직 및 회원에 대한 기금 이용
5.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사업

제5조 (기금회원)

1. ‘이용회원’이란 (사)마을기금 사람숲 기금을 빌려가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출자회원’이란 (사)마을기금 사람숲에 30만원 이상 기금을 맡기는 개인이나 100만원 이상 기금을 맡기는 단체를 말한다.
3. “사람숲” 회원(“사람숲”정관 제2장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참고) 하는 회원은 이용회원과 출자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종류)

1. “회원적립금”은 사람숲 회비 중 개인회원은 매월 2만원 이상, 단체회원은 매월 8만원 이상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자신탁금”은 사람숲에 일정기간 동안 이득을 취하지 않고 맡기는 자산을 말한다.
3. “기부금”은 사람숲에 후원하는 자산을 말한다.
4. “회원목적계”는 “사람숲”회원이 60% 이상 포함된 모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5. 그 외 사회투자기금과 같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금이 있을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

1. 본 기금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과 위원은 2년의 임기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기금의 투융자, 기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한다.
4.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이사회에 상시 보고한다.

제8조 (기금 이용방법)

1. 대부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대부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자문위원)

1. 본 기금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기타)

1. 기타 본 기금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운영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을기금 사람숲 대부규정

제정 2013. 12.
1차 개정 2015. 2.
2차 개정 2016. 7. 27.
3차 개정 2017. 3. 14
4차 개정 2018. 3. 22

1. 대상 : 기금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에 따른 대부의 종류 및 대부가능금액

1) 법인회원, 출자회원

- (1) 개인: 500만원 이내
- (2) 단체: 2,000만원 이내

2) 이용회원

- (1) 개인: 30만원 이내, 3개월 이내 분할상환 조건
- (2) 단체: 1,00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조건

3. 이용수수료

1) 법인회원, 출자회원

- (1) 적립금 또는 출자금 이내인 경우: 이용수수료 없음
- (2) 적립금 또는 출자금 이상인 경우: 분할상환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아래 표의 상환기간별 기본 이용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단, 일정기간 거치후 상환시, 기본 이용수수료에 추가 이용수수료를 더한 이용수수료를 적용한다.

분할상환 시 기본 이용수수료		거치 후 상환시 추가 이용수수료	
상환기간	이용수수료	거치기간	이용수수료
3개월 이내	2.0%	3개월 이내	+0.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3.0%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5%
12개월 초과 18개월 이내	3.5%	12개월 초과 18개월 이내	+2.0%
18개월 초과 25개월 이내	4.0%	18개월 초과 24개월 이내	+2.5%
25개월 초과	5.0%		

2) 이용회원

- (1) 개인: 3개월 이내 분할상환: 연6.0% (월0.5%) 예) 30만원 이용시 월 1만5천원 이용수수료

(2) 단체

- ① 3개월 이내 분할상환: 연6.0% (월0.5%) 예) 1,000만원 이용시 월 5만원 이용수수료
- ②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연7.2% (월0.6%) 예) 1,000만원 이용시 월 6만원 이용수수료

4. 대부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 (1) 도장 혹은 서명
- (2) 대부신청서(서식 제공)

2) 단체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 (1) 전년도 결산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 (2) 차입금 활용계획서(서식 제공)

5. 대부절차 : 서류제출 → 기금운용위원회 서류 확인 및 심사 → 지급 → 이사회 보고

6. 기타

- 1) 대부는 운용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 기금운용위원이 2명 추가되어 7명이 될 경우 과반수 이상, 그렇지 않을 경우 2/3 이상으로 한다.
- 2) 대부가능금액은 2조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초과되는 기금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받는다.
- 3) 기금 이용은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시 12개월 분할 상환한다.
- 4) 이용수수료는 매년 전체이용기금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 5) 3개월 연체 혹은 이용회원 신청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정을 거친다.

<별첨자료 4>

회원 명부('22년 12월 31일 기준)

번호	이름(가나다순)	번호	이름(가나다순)
1	강은주	17	마을생협
2	강철구	18	문광애
3	고경임	19	민병선
4	고은석	20	박완민
5	권현옥	21	오민조
6	김기완	22	유대기
7	김남례	23	이영희
8	김상숙	24	이은영
9	김선희	25	장수정
10	김성주	26	전상희
11	김성희	27	정신향
12	김일영	28	조신희
13	김윤진	29	최수경
14	김은주	30	최윤정
15	김태희	31	하재희
16	남인숙	32	

(사)마을기금 사람숲



주 소: (03710)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25 (남가좌동)

전 화: 02)312-3903, 3909 02)322-9755

홈페이지 : <http://사람숲.com>

회비계좌: 국민은행 498101-01-262502

신협 131-016-888210 (예금주: (사)마을기금 사람숲)